

# 농산물 수입과 부과금 제도



김 동 휘

단국대 농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역임

## 1. EC 의 농산물수입과 변동수입 부과금 제도

20세기에 와서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른 서유럽 나라들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였으며 경제분야에서 각국이 국경을 터버리고 한 나라처럼 행동하자 하여 만든 것이 1957년 발족한 「유럽 경제공동체」이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화란, 벨지움, 룩셈부르크의 여섯 나라가 회원이 되었으며, 그후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하여 9개국이 되었고 1981년 그리스가 들어 왔고 1984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경제분야의 노력은 종국에는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으나 정치적 분야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나라 사이에는 산업간의 불균형이 없지 않으나 총체적인 경제발전단계는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공동유대를 형성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서는 토지, 기후 등 자연조건과 부존자원은 물론 고용구조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EC 형성 10년후인 1967년 농업정책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소위 '공통농업정책(CAP)'을 뚜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목표는 회원국들 사이에 농산물의 수출입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마치 한나라의 시장처럼 운용하고 역외(회원국 아닌 다른나라)에 대하여는 비판세 장벽을 쌓아서 공동으로 역내 농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 기본목표는 식량의 역내 자급을 달성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가족중심적 농업구조를 전실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보호장벽과 함께 정교하게 짜여 있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과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가트(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신에 입각하여 가맹국들(현재 88개국이며, 자유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은 무역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쌓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나라들(선진국 포함)은 수입쿼터, 수입부과금과 같은 비판세장벽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EC

각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품목수(쿼터)는 다음과 같다. 즉 프랑스 19, 서독 3, 영국 1, 베네룩스 2, 이탈리아 3, 아일랜드 7, 덴마크 5 품목이다.

EC가 이러한 수입쿼터제 외에 농업보호를 위하여 쓰고 있는 정책수단이 소위 변동수입부과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EC의 농산물가격을 세계시장 가격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차단시키는 장치이다. 어떻게 운영되는가? EC는 CAP를 통하여 70%의 농산물에 대하여 국경보호와 국내가격지지를 병행하고 있으며 25%의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경보호조치만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생산비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국경보호조치는 앞서 말한 수입물량제한(쿼터제도), 관세, 그리고 변동수입부과금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EC의 농산물가격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 있다. 정책가격만 하더라도 목표가격, 지도가격, 표준가격, 기초가격, 경제가격, 수문가격, 참고가격, 개입가격, 수매가격, 판매중지가격 등이 있다.

목표가격은 EC 역내에서 생산여건이 가장 불리한 대표적 지역의 도매가격이며 곡물, 설탕, 우유, 올리브유, 유채, 해바라기씨에 적용된다.

지도가격은 생산비 및 비농업부분과의 소득균형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매년 결정하는 가격이며 쇠고기와 포도주에 적용한다. 경제가격은 목표가격 따위의 지표적 가격에서 수입항구와 목표가격 기준지역(품목마다 다르며 곡물의 경우 뉴이스버그) 사이의 수송 및 하역비, 마진을 공제한 가격으로서 수입가격의 목표하한선을 이루며 곡물, 설탕, 우유, 올리브유, 유채, 해바라기씨에 적용한다.

수문가격은 가장 높을 적인 생산을 전제로 한 역외국의 생산비를 기초로 한 가격이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에 적용되고 있다. EC 각료회의는 해마다 생산비조정, 농공간의 소득격차, 품목별 수요공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각종 정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산물이 수입

되면 먼저 소정의 관세(일반적으로 낮다)를 물게 되는바, 1973~74년을 제외하고는 보통 국제시세가 EC의 가격보다 훨씬 낮으므로 관세를 물고도 낮은 수준이다. 만약 그대로 들여오면 대량의 수입품이 들어와 EC 역내의 농산물을 가격은 하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익을 볼 것이나 농가소득과 농업생산은 감소되고 말 것이다.

EC 각국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는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상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부족불제도)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정부재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EC는 정책적인 지지가격(경제가격, 수문가격 따위)과 수입가격(관세지불 후)과의 차이를 정수하여 「유럽농업지도 및 보증기금」에 적립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부과금은 수입가격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수입부과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만약 EC의 공급이 달리고 국제시세가 높으면 반대로 전술한 「기금」에서 수입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EC의 농산물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저장비가 많이 들면 국제시장에 펴내야 한다. 이때 EC 가격은 높고 수출가격은 낮으므로 그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하고 있다. 1979년 EC의 이와 같은 수출보조액은 총액 4.3억 EUA(유럽통화단위)에 달하였고, 곡물(14억 EUA)과 낙농품(16억 EUA)이 가장 커으며 달걀과 닭고기의 수출에도 4,100만 EUA가 보조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EC는 세계농산물시장이 공급과다로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수입부과금으로 역내에 대한 혈값 농산물의 유입을 억제하고 역내의 가격을 높이 유지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때 EC의 생산량이 많으면 잉여농산물을 보조를 주어 수출함으로써 국제가격을 더욱 떨어뜨리는 현상을 낳는다. 반면 세계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여 값이 오를 때에는 보조를 주어 역내 생산

량으로 부족한 물량을 수입하게 되므로 국제 시세를 더욱 뛰게 만든다. 이리하여 EC를 국제 농산물시장의 무임승객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C가 농업을 이 정도로 보호하여 농업 생산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농산물 공급이 이 정도로 안정되는데 공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EC의 현재의 공통농업정책은 세계농산물시장의 안정을 돋고 있는 것이다.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국간 협상이 출기차게 계속되고 있으나, EC는 변동수입 부과금제도만큼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폐지하면 공통농업정책이 무너지고 드디어는 EC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우리나라에도 변동수입 부과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가?

관세는 재정관세이든 보호관세이든 간에 세계의 추세가 「가트」 이념과 다국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점점 내리고 있으므로 「가트」 가맹국인 한국으로서도 관세율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는 국제경쟁력이 약하지만 장차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의 육성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세 아닌 다른 방법, 이를테면, 수입쿼터나 변동수입부과금과 같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제도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간추려 보자.

먼저 장점으로서는 첫째, 전략적으로 선정된 농산물의 국내 가격을 결정된 범위 안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 즉 국제시장가격의 칠새 없는 변동으로부터 국내가격을 차단시켜 목표수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국내 생산자의 가격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생산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농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이 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어떤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그 가격지지 수준은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농업의 생산·경영구조가 달라질 것이며 농산물의 수급상황이 변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으로 보아 생산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품목(이를테면 열대작물)은 대상에서 빼고 농가소득과 국민경제(기본식량의 확보)의 관점에서 또 어느 특정지역 경제의 견지에서(이를테면 제주도의 감귤) 중요한 품목을 보호대상으로 선택하면 이들의 생산은 점차 늘어갈 것이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시정되어 갈 것이다.

셋째, 농업개발과 농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비교적 쉽게 조성할 수 있다. 농산물은 대부분 값이 떨어져도 수요가 민감하게 증가하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값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민감하게 줄어드는 상품이 아니다. 또 농업생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바 이는 기후와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작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술이나 농지기반이 개량되어 농산물이 증산되면 가격이 하락하여 땀흘려 농사지은 사람은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그 혜택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리하여 농업에 대한 거액의 생산기반 투자는 농민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맡아서 해온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를 하자면 자금이 선결 문제이다. 현재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 최근 경제개발비 가운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 왔으며, 약 10퍼센트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즉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양곡 관리기금, 축산기금, 농업개발자금 따위가 있으나, 공통적인 문제는 기금조성의 어려움이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00만톤의 곡류와 축산물 등 약 25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곡류의 자급율은 50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농산물수입 가운데 국내 농업과 경합이 되는 품

목에 대하여 변동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 액수가 총수입액(25억 달러)의 반액정도가 되어 약 1조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그 배분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농업개발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부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농산물수입의 자유화폭도 늘려야 한다면 쿼터적용 품목수를 줄이는 대신 변동수입 부과금제도를 채택한다면 국내 농업에 대한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서는, 첫째, 국내 지지가격수준을 너무 높이 설정하면 생산파이이 만성화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율을 왜곡시킬 수 있다.

둘째,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는 신뢰도가 높은 품목별 자료와 정교한 산업적 경제적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내적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품목의 선정, 국내 정책 가격의 결정, 매일 수입 상황을 살펴서 적용수입가격을 정하고 부과금을 일일이 부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유럽농업지도 및 보증기금」과 같은 통일된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도 고도의 기획능력과 집행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장단점과 필요조건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의 관계법제도는 물론이고 농업행정과 식량행정의 조직과 스타일도 일부 변경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INCUBATING SYSTEM (부화시설) 새롭게 선보인 평농의 부화기 PUMISET

- ① 정밀한 자동제어로 건강추 생산
- ② 작업의 성력화로 인건비 절감
- ③ FRP(유리섬유를 보강한 푸라스틱)판넬을 사용
- ④ 위생·방역·오염방지로 언제나 새 것 같고
- ⑤ 미려한 외양, 긴수명
- ⑥ 한국의 환경에 가장 적합도록 개량 고안된 기계

※ 부화장 설계 및 부화장 관리점검 상담

### 평 농 죽 기

주소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 : 평택 (1333) 4-7484